



기타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

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상 부동산거래신고, 「외국인토지법」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·허가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·허가 제도의 근거법률 일원화

주요내용

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

- 2016.1.19. 공포, 2017.1.20 시행

○ 기존법률 및 제정법의 관계

- 실거래신고 (부동산 거래신고법 대체 입법)
-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·허가 (외국인토지법 폐지)
- 토지거래허가 (국토계획법 관련규정 삭제)

무엇이 달라지나요?

	종 전	변 경
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」	신고대상: 기존 부동산(주택, 토지등) 매매, 주택 분양권 전매	기존 부동산 매매, 부동산의 분양계약,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
	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 원칙,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사의 신고 원칙	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, 지자체 공공기관,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
	신설	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-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사: 전액 면제 -조사 후 자료제공 협조사: 50% 감경
「외국인 토지법」	법 시행(~'17.1.19.)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매, 증여, 상속, 계속보유 등 계약체결 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 ※ 「부동산실거래신고법」에 의한 거래신고 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같음	법 폐지 →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 부동산 공급(분양)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(주택, 오피 스텔·상가, 택지 등)되어 별도의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불필요 ※ 매매·분양계약 외 증여, 상속, 계속보유 신고 등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

문의처: 부동산정보과 ☎ 2670-3729, 3739 시 행: 2017.1.20.

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 종료

공유토지에 한하여 관련 법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분할처리할 수 있는 「공유토지분할 특례법」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분할시 각종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해야만 토지분할 처리 가능함을 알림

주요내용

○ 사업개요

- 일 시: 2017. 5. 22. 법시행 종료
※ 법시행 종료 전에 신청한 토지는 1년 연장
- 대 상: 토지의 분할

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안내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가 폐지됨

주요내용

- 개정된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
 - 과거의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됨
-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증명서 제도가 폐지
 -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
 -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 증명서면,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,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등본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함

무엇이 달라지나요?

	종 전	변 경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종류	- 일부사항 증명서 (현재사항) - 등록사항별 증명서 (모든사항)	- 일반증명서(현재사항) - 상세증명서(모든사항) - 특정증명서(친권·후견 사항만)
출생신고시 인우보증제 폐 지	- 출생신고시 증명자료 (출생증명서 또는 인우보증)	- 출생신고서 증명자료 (출생증명서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)

문의처: 민원여권과 ☎ 2670-3093 시 행: 2016.11.30.